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 인증서 등 기재내용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상근(常勤) 인증 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함

나.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재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등으로 한정하여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함

다. 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은 실제 사용 값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증서를 통하여 안내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비대상(사전심사 완료, 국무조정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5항 및 제8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작성 및 관리
2.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
3. 인증제도 홍보
4. 인증관련 장비의 기능유지
5.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업무

제5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후에”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4항 후단 중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을 “경우”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을 “제4조제4항제1호의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도서평가”를 “인증 평가(도서평가)”로, “작성 및”을 “작성)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11조제6항”을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력에게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효기간: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효기간: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u> <u>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제4조제5항 및 제8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작성 및 관리</u> <u>2.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u> <u>3. 인증제도 홍보</u> <u>4. 인증관련 장비의 기능유지</u> <u>5.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업무</u>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② (생략)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후에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u>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경우</u> ----- ----- -----

현행	개정안
쳐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생략)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⑥ (생략)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 제17조제6항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 경우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 ① 제4조제4항제1

현행	개정안
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u>도서평가</u>, 현장 실사, 인증 평가서 <u>작성</u>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예비인증 평가 <신설>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 제7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 ⑤ (생략)	호의 다른 ----- ----- ----- -----. 1. ----- 인증 평가(도서평가----- 작성) 및 ----- 2. 제11조----- -----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력에게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 제6조제9항-----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
제 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전 화 번 호: 5. 설 립 근 거: 6. 설 립 목 적: 7. 설 립 연 월 일: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 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전 화 번 호: 5. 설 립 근 거: 6. 설 립 목 적: 7. 설 립 연 월 일: 8. 유효기간: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제 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전 화 번 호: 5. 설 립 근 거: 6. 설 립 목 적: 7. 설 립 연 월 일: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제 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전 화 번 호: 5. 설 립 근 거: 6. 설 립 목 적: 7. 설 립 연 월 일: 8. 유효기간: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준공연도	:		
주 소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층 수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연 면 적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의 주된 용도	:	합 계	
건축물 대지 외 신	:	대지 내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대지 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인증등급
	53%		ZEB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동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유무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Sigma(\text{에너지소비량}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Sigma([\text{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text{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준공연도	:		
주 소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층 수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연 면 적	:	에너지자립률	
설 계 자	:	합 계	
공사시공자	:	대지 내	
공사감리자	:	대지 외	
건축물 대지 외 신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 (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인증등급
	53%		ZEB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동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유무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Sigma(\text{에너지소비량}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Sigma([\text{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text{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 F A X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주거용 건축물(주용도: , 총전용면적 이내: ㎡, 분양: ㎡) [] 주거용 외의 건축물(주용도: , 연면적: ㎡, 층수: 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대지 내 (),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	
	인센티브	융자를 받否(%), 건축물 최대 높이 완화(%), 조경면적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원, 소득세 감면(%), 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PQ) 가점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또는 예비인증서 사본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동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중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결재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인증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 F A X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주거용 건축물(주용도: , 총전용면적 이내: ㎡, 분양: ㎡) [] 주거용 외의 건축물(주용도: , 연면적: ㎡, 층수: 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대지 내 (),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또는 예비인증서 사본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동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중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결재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인증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증번호 :	
준공연도 :		평가자 :	
주소 :		인증기관 :	
층수 :		운영기관 :	
연면적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설계자 :			

인증등급	
인증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m ² ·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m ² ·년)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m ² ·년)	배출량
	100		1		60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Wh/m ² ·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합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₂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모든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증번호 :	
준공연도 :		평가자 :	
주소 :		인증기관 :	
층수 :		운영기관 :	
연면적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설계자 :			

인증등급	
인증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m ² ·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m ² ·년)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m ² ·년)	배출량
	100		1		60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Wh/m ² ·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합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₂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모든용지(1종) 120g/㎡)

- 15 -

[별지 제6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준공연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주소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층수 :		에너지자립률 합 계	
연면적 :		대지 내	
건축물의 주된 용도 :		대지 외	
건축물 대지 외 신·증축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인증등급
	53%		ZEB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유무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Σ[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Σ[(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보정계수))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6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준공연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주소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층수 :		에너지자립률 합 계	
연면적 :		대지 내	
건축물의 주된 용도 :		대지 외	
설계자			
건축물 대지 외 신·증축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인증등급
	53%		ZEB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유무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Σ[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Σ[(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보정계수))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16 -